

—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0월 16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0월 21일

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이 용 태

나. 제안이유

-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모델을 근거로 주민 공개 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개행정 구현.

다. 주요내용

- 주민 공개의 제한(제5조)
 - 제2호 :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, 정책에 관한 사항(삭제)
 - 제4호 :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(삭제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
-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모델을 근거로 주민 공개 제한 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여 주민에게 공개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법이나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